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2. . . (제 회)	

공 항 시 설 법 시 행 령 일 부 개 정 령 안

제 출 자	국무위원 ○○○ (국토교통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2.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공항시설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첨단 항법기술의 발달에 따라 우리나라는 위성을 기반으로 하는 차세대 항행안전시설인 ‘한국형 항공위성서비스(KASS, 한국형 SBAS)’을 연구 개발과제로 구축 추진 중임.

이에, 차세대 항행안전시설인 위성항법시설(SBAS)의 구축 완료 이후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해당 업무를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항시설법」이 개정(법률 제18938호, 2022. 6. 10. 일부개정, 2022. 12. 11. 시행)됨에 따라 위성항법시설(SBAS) 관리·운영 업무를 수행 할 위탁기관을 정하고 관련 절차 등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55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3. 주요내용

- 가. 공항시설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항행안전시설의 관리 업무 중 위성항법시설(SBAS)의 관리·운영 업무를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기관·단체 등에 위탁하도록 함(안 제55조제3항 신설).
- 나. 업무위탁 시 위탁받는 기관, 위탁업무 내용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도록 함(안 제55조제4항 신설).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공항시설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항시설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의 제목 “(권한의 위임)”을 “(권한의 위임·위탁)”으로 한다.

제55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항행안전시설의 관리 업무 중 위성항법시설(항행안전무선시설 중 SBAS를 말한다)의 관리·운영 업무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또는 다음 각 호의 기관·단체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력·장비 등 기준을 충족하는 기관·단체에 위탁한다.

1.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3. 「민법」 제32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항행안전시설의 관리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4. 그 밖에 항행안전시설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받는 기관 및 위탁업무의 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5조(권한의 위임) ①·② (생략) <u><신 설></u>	제55조(<u>권한의 위임·위탁</u>) ①·② (현행과 같음) ③ <u>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1조 제2항에 따라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항행안전시설의 관리 업무 중 위성항법시설(항행안전무선시설 중 SBAS를 말한다)의 관리·운영 업무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또는 다음 각 호의 기관·단체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력·장비 등 기준을 충족하는 기관·단체에 위탁한다.</u> 1.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3. 「민법」 제32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

<신 설>

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항행
안전시설의 관리와 관련된 업
무를 수행하는 법인

4. 그 밖에 항행안전시설 분야
의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위
탁받는 기관 및 위탁업무의 내
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관보
에 고시해야 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국토교통부 항행시설과	
연 락 처	(044) 201 - 4350